

# 일본법에 있어서의 기업결합 규제정책과 최근 동향



양 만 식

와세다대학 박사과정, 상법전공

##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합병이나 기업매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의 제약완화는 물론,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및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기업합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  
체제의 정비는 물론,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업통합 사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 ● I. 총설

최근 일본에서는 합병, 매수, 사업제휴라는 말이 거의 일상용어로 되다시피 쓰여지고 있다. 기업의 합병제휴에 의한 업계재편의 파도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대는 마치 기업제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동향은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업계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 업계재편성, 합병·제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규모가 과거와는 달리 초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경제의 글로벌화, 규제완화에 따른 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 등에 의해 규모를 크게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하며, 서로 제휴하여 경쟁상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테에 있다. 치열한 세계경쟁 하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타사와 결합하여 대항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이전의 일본에 있어서는 불황대책으로서의 합병제휴는 있었으나, 경영전략적으로 합병제휴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회사개념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이며,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그 구성원을 삽감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매매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기업풍토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

려 기업을 전부 빼앗는다거나 적대적으로 인수해 버린다는 식으로 거의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근 합병 등을 통한 기업결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합병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점금지법이다. 독점금지법은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경제의 민주적 발전과 일반 소비자의 이익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일본 독점금지법 제1조 참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며,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한다. 카르텔, 임찰담합, 사적독점,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와 함께 트러스트를 규제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트러스트는 기업조직상의 강한 결합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합병, 영업양수, 주식소유, 임원겸임 등이 있다. 카르텔이 기업의 사업활동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결합임에 반하여, 트러스트는 기업조직상의 결합이므로 일단 결합관계가 성립하면 전면적, 영속적인 것으로 된다. 경쟁의 제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과 달리, 합병 등에 의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영효율화 등 시장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독점금지법상의 평가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업의 M&A와 특히 관계가 있는 독점금지법의 규정은 제4장(제9조~18조)이다. 독점금지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법 주체는 사업자 및 그 집합체인 사업자단체이지만, 제4장은 특히 회사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경쟁

제한 내지 경쟁저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4장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대폭 개정되었다. 즉 1997년 11월에 지주회사가 해금되었고, 1998년 10월 임원겸임의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999년에는 합병, 영업양수 등의 신고제도, 주식소유의 보고제도가 폐지되었다. 본고는 일본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업결합과 관련한 여러 제도의 규제완화책을 간단히 고찰함과 동시에 최근에 있었던 합병 등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현실과 최근 세계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법체계가 그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리라 생각하며, 여기서 소개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례 또한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 ● II. 일본법에 있어서의 기업결합규제

### 1.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보고제도의 간소화

종래에는 합병, 영업양수, 주식소유 등에 관해 일정한 신고·보고가 의무적이었으나, 1999년부터 신고·보고내용 및 절차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즉 합병에 관해서는 종래 전부가 신고대상이었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규모가 큰 합병만을 신고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총자산의 합계액(합병당사자의 총자산에 그 모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을 합계한 액)이 100억엔 이상의 회사와 총자산(합병당사자만의 총자산)이 10억엔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합병일지라도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간의 합병은, 모자회사간 또는 형제관계가 있는 회사간의 합병일지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영업양수 등에 관해서도 합병에 준한 신고제도로 개정되어, 양수회사의 총자산 합계액이 100억엔을 초과하여 양수대상이 되는 영업의 매상과 또는 총자산액이 1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식소유에 관해서는 총자산 20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는 매년 주식소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대규모회사간에 새로운 주식취득이 있는 경우 그 취득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총자산액(자기의 총자산에 그 모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을 합계한 액)이 100억엔을 초과하는 회사가, 총자산 10억엔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보고대상이 된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주식취득자에 의한 직접적인 취득비율이 10%, 25%, 및 50%의 3단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준 지주비율의 범위 내에서의 주식취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보고제도의 간소화는 기업으로서는 사무부담이 경감되지만, 동시에 합병 등이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후 30일을 경과하면 그 합병이 나중에 독점금지법상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신고제도하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닌 합병이라 할지라도 금지규정은 개정전과 동일하므로 합병후 독점금지법상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사전상담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갖지 못하며, 신고가 필요 없게

된 임원겸임이나 영업양수 등에 관해서도 합병과 같은 문제가 있다. 또한 주식소유에 관해서도 개정전과 같이 1년마다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체크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은 합병 등을 함에 있어서 자기책임하에 위법성을 판단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2. 합병에 관한 규제

독점금지법 제15조는, 국내의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합병으로 인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시장의 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법 개념이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 서비스에 관하여 성립하는 사항이지만, 제품의 성질 등에 따라서는 지리적인 범위가 전국적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획정되어진 시장에 있어서 경쟁기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쟁 자체가 감소하여 특정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품질, 수량 및 그 외의 제반 조건을 좌우하는 것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든지 또는 적어도 나타나려는 정도에 이른 상태인 것이다(1951년 동보(東寶)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사건, 동경고등재판소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말 기업결합규제와 관계되는 법 운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새롭게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으나,

이것은 종래의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점도 있다. 기술한 것처럼 종래에는 합병 전부가 신고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점적 심사대상이 되는 합병을 선별하는 기준이었다. 예컨대 합병후의 점유율 25%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합병후 당사 회사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 합병은 독점금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합병은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합병을 중점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새로운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선별기준이 아니라 위법성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소유는 금지된다(제10조). 합병과 다른 점은 주식소유에 의해 양자간에 결합관계가 생기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양자간에 결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쟁에 대한 영향은 합병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된다.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와 피소유회사 와의 결합정도는 지주비율을 가지고 판단한다. 지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25%를 초과하는 단독 필두주주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양자간에 결합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지주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주주순위가 제3위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결합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주비율의 정도와 순위, 주식의 분산도, 임원겸임의 상황,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합관계가 형성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 4.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

독점금지법 제9조의2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기업집단의 중핵이 되는 대규모회사가 주식소유를 증가시켜, 계열화 또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지배주주(지주비율 50%를 초과)인지를 불문하고 주식소유총액에 대한 일정한 한도를 둔 규정이다. 여기서 대규모회사란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35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이 1400억엔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규모회사는 그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에 상당하는 액수 중 많은 쪽의 액수를 초과하여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주식소유액(국내회사에 한함)이 자본금 또는 순자산의 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이다. 소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컨대, 공동분사화에 의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 100%자회사의 주식, 벤처캐피털의 주식 등이 추가되었다.

### 5. 영업양수 등의 규제

독점금지법 제16조는 영업양수 이외에 4가지의 유사행위를 규정, 그 행위가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의 유기적인 재산의 집합체나 조직체를 말한다. 규제대상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양수하는 영업은 국내의 것에 한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영업의 양수도 규제 대상이다. 본 조는 영업양수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또는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진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의 판단에 관해서는 합병의 경우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모자회사간의 영업 등의 양수, 100%출자에 의한 분사화를 위한 영업양수에 관해서는 통상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기업결합 가이드라인).

## 6. 임원겸임의 제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주식보유만이 아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독점금지법은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임원겸임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3조1항, 2항). 독금법이 임원 겸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임원겸임에 의하여 복수의 회사간에 결합관계가 발생하여 시장에 있어서 경쟁제한이 초래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주식보유의 경우와 같이 임원겸임을 행하고 있는 회사간에 결합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겸임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임원총수에서 차지하는 다른 당사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비율이 과반수인 경우와 겸임하

는 임원이 쌍방회사에 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경우가 임원겸임에 의해 결합관계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 ● III. 최근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결합의 사례

### 1. 독점금지법 제4장과 관련된 신고 등의 동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래부터 합병, 영업양수 등의 동향 및 주요 기업결합에 관한 사례를 정리, 명확하게 발표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0년도에 있어서의 신고 등의 동향에 관해서는 2001년 5월 23일 그 발표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2000년도에 있어서의 신고 등의 동향을 고찰함과 동시에, 200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기업결합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도에 있어서의 신고 등의 동향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 총 건수는 1999년도에 비하여 1월에서 2월 정도 증가했고, ② 신고 등의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금융, 보험업과 관계되는 합병, 영업양수 등의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1999년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했고, ③ 최근 몇 년간 대형의 사업재편이 증가경향에 있다고 하지만, 총자산 1000억엔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로부터의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상황을 보면 영업양수 등의 신고건수가 1999년도에 비해 3할 정도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의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적 통합이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1) 합병, 영업양수 등의 동향

2000년도에 있어서의 합병에 관한 신고수리 건수는 170건(전부 국내회사간의 합병)으로, 1999년의 151건에 비해 약12.6% 정도 증가했다. 또한 2000년도의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건 수는 213건으로 1999의 179건에 비하면 약 19% 정도 증가했다. 이를 총자산별로 보면, 특히 총자산이 1000억엔 이상의 대규모사업자로부터의 영업양수 신고건수가 1999년과 비교하여 약3할 정도 증가했다.

## 2) 주식보유 등의 동향

2000년도에 있어서 회사의 주식소유보고서의 제출건수는 804건이었으나 외국회사에 의한 주식보유보고서의 제출건수가 42건 정도 있었다.

## 2. 주요 기업결합의 사례

### 1) (주)동경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신탁은행(주) 및 일본신탁은행(주)의 지주회사설립에 의한 사업 통합

#### ① 본 건의 개요

본 건은 동경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신탁 및 일본신탁이 고객의 다양한 금융필요성(needs)에 대하여 업태를 초월한 다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지주회사(명칭은 「(주)미쓰비시동경 파이낸셜 그룹」)를 설립하여 전면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동경미쓰비시은행, 미쓰비시신탁 및 일본신탁은 2001년 4월 2일을 목표로 주식이전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법인격은 인정하여 둔 채 신설되는 공동지주회사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2001년 10월 1일을 목표로 지주회사하에 미쓰비시신탁,

일본신탁 및 동경신탁은행(주)이 합병할 것으로 되어 있다.

#### ② 독점금지법상의 검토

- 가)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에 관하여  
(제10조)

본 건의 통합이 금융분야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검토했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금업무, 대출업무, 외국환업무, 증권업무, 신탁업무 등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에의 영향검토에 관해서 보면,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는 본 건의 통합에 의해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신탁전업은행 베이스에서의 합산점유율이 20%에서 15% 전후로서 그 순위는 4위 정도이다. 또한 금후에도 다른 도시은행 등의 통합이 예상되는 점에서 상위은행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 나)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에 관하여(제9조)

지주회사에 관해서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지주회사에 관한 견해」(이하 9조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지주회사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그룹이 9조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금지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1유형은 지주회사그룹의 규모가 크고(지주회사그룹의 총자산 합계가 15조엔을 초과), 또한 상당수(5이상)의 주요 사업분야 각각에 있어서 다른 대규모회사(단일 기업의 총자산이 3000억엔을 초과)를 가지는 경우가 요건이지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그룹의 총자산 합계액은 15조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유형

으로는 대규모 금융회사(단일의 총자산액이 15조엔을 초과)와 금융 또는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 이외의 대규모회사(단일의 총자산액이 3000억엔을 초과)를 가지는 경우가 그 요건이나, 총자산이 3000억엔을 초과하는 사업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제3유형은 상호 관련성 있는 상당수(5이상, 규모가 아주 큰 사업분야에 속하는 유력한 회사를 가지는 경우는 3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의 각각에 있어서 다른 유력한 회사(점유율이 10%이상 또는 매상고가 3위 이내)를 가지는 경우로서, 금융과 관련한 사업분야에 있어서 은행 이외에 유력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당사 은행의 지주회사그룹(동경미쓰비시은행 및 미쓰비시신탁과 이를 두 은행의 국내자회사 및 실질자회사)이 9조의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 어느 금지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건 통합에 의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2) 미쓰이화학(주) 및 타케다(武田)약품공업(주)에 의한 우레탄사업 등의 통합

### ① 본 건의 개요

본 건은 미쓰이화학과 타케다약품이 구미(歐美)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항하고 양사의 사업을 통합함에 의해 수익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생산, 물류 및 판매에 있어서 코스트삭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양사의 우레탄사업의 통합을 예정한 것이다. 타케다약품은 공동출자회사의 영업개시 5년 후에는 당해 공동출자회사 지분의 모든 주식을 미쓰이화학에

양도하겠다고 하고 있다.

### ② 독점금지법상의 검토

가) 본 건에 있어서는 통합대상인 우레탄원료마다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기에서 확정된 거래분야 중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연질우레탄거품(foam) 등의 원료인 TDI의 제조, 판매분야에 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본 건의 통합에 의하여 TDI와 관계되는 판매수량점유율은 약60% 정도로서 그 순위는 1위이고, 상위 3사의 누적집중도는 약90% 정도이며, 그 시장에서 판매수량점유율이 10%를 넘는 경쟁회사는 2사 정도이다. 또한 당사회사의 TDI의 생산능력점유율은 약80% 정도로서 국내제조회사의 생산가동율은 높지만, 생산수량의 7할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당사회사에 비해 국내 경쟁업자의 생산비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업자가 현재의 판매수량 이상으로 국내에 공급할 여력이 적다고 판단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TDI의 제조, 판매분야에 대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점을 당사회사에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 회사가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창구할 경우 사용자가 복수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경쟁업자가 당해 인수권분의 공급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국내시장에 있어서 당해 회사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점, 아시아지역 등에서 TDI공장의 새로운 증설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탱크용기의 제공을 받는 것에 의해 수입이 용이

하게 된다고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통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3) 미쓰이해상화재보험(주)과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의 합병

#### ① 본 건의 개요

본 건은 미쓰이(三井)해상 및 스미토모(住友)해상이 손해보험업계에 있어서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1일을 목표로 미쓰이해상을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한 것이다(새로운 회사명은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 ② 손해보험시장의 상황

1995년 이후 보험업법 등이 개정되어 손해보험시장에 있어서 자유화가 진전되었으며, 보험료율의 자유화나 외자계의 보험회사 및 타업종으로부터의 신규진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보험상품의 다양화, 서비스 향상이 크게 진전되었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상품 취급이 증가하면서 외국자본계의 보험회사 등이 실적을 크게 올리고 있다.

#### ③ 독점금지법상의 검토

손해보험시장에 있어서는 손해보험 전체에 관해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하는 점 이외에, 제공되는 보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로도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

한다고 판단했다. 본 통합에 의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상의 손해보험 전체에 있어서 합산점유율이 15% 이상으로 그 순위가 2위로 된 점 이외에, 손해보험의 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15%), 해상운송보험(25%) 및 상해보험(20%) 등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를 분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확정된 어떠한 거래분야에 있어서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 IV. 결론

현재 우리 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관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인 합병 및 매수 등 관련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합병이나 기업매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체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의 제약완화가 필요하며,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든지 시장의 전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보듯이 일본이 기업합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체제의 정비는 물론,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업통합 사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판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공정**